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11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김호민, 박종익, 박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범준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9 지분에 관하여 2019.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19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14. 접수 제28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C은 2003. 11. 4.경 B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주)C은 B에 대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나. D(주)는 2007. 8. 13.경 B와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D(주)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위 신용대출채권은 (주)E 등을 거쳐 F 유한회사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다. (주)C과 F 유한회사는 (주)G에 위 각 채권을 매도하였고, (주)G은 위 각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2010. 5. 4. 및 2012. 12. 14.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 26. (주)G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G의 위임을 받아 2018. 4. 19.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7. 10. 31. 기준으로 위 각 양수금채권은 원금 합계 11,736,683원, 연체이자 합계 20,436,845원에 이른다(총 합계 32,173,528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마. B는 2019. 10. 7.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14. 접수 제28220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B는 피고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10. 7.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안동시 H 임야 32926㎡ 및 안동시 I 임야 10909㎡가 있었는데 위 각 임야의 가액은 17,420,134원 정도로 추정되고, 소극재산으로는 32,173,528원 상당의 이 사건 채무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B의 적극재산은 17,420,134원 정도인 반면, B의 소극재산은 32,173,528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

3) 따라서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 3.경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목 록

1. 안동시 J 전 357㎡
2. 안동시 K 대 731㎡
3. 안동시 L 전 69㎡, 끝.

